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2022. 6.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항 및 용어를 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 개정(안 제7조)
- 나. 기존 법에서 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득·처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설(안 제12조제2항)
 - 한 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 한 건당 토지 면적 :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
- 다. 사용·대부료 등의 납부 부담 완화(안 제22조의3, 제35조)
 - 가)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 100만원 초과 : 3회 이내 분납
 - (나) 200만원 초과 : 4회 이내 분납
 - (다) 300만원 초과 : 6회 이내 분납
- 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 확대 신설(안 제32조제7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았을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09. 26. ~ 2022. 10. 17.)

2) 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의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
준 가격 및 면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6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대상”을 “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
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
·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회”를 “연3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회”를 “연4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4회”를 “연6회”로 한다.

제26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들”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7조제7항제1호”를 “영 제17조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35조제2항제1호”를 “영 제3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6월 이내 3회”를 “연3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9월 이내 4회”를 “연4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00만원 초과 : 연6회 분납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 신설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성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⑦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 ----- 제10조의3----- -----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② (생략)</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법 제16조제2항제6호-----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 ----- ----- -----.</p>

결을 얻어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 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생 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 략)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 가격 및 면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사용허가
대상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용허가-----
-----.

<p>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u>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제20조(사용허가) ----- <u>사용</u>허가----- ----- -----.</p>
<p>1. ~ 7. (생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u>사용·수익</u>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 <u>사용</u>----- -----.</p>
<p>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 하고자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u>허가를 신청하는 단체 또는 법인</p>	<p>1.----- ----- ----- <u>사용</u>허가----- -----</p>
<p>2. ~ 5. (생략)</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u>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u>사용</u>허가부----- ----- -----.</p>
<p>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u>사용·수익</u>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u>사용</u>허가-----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등의 채취를 목
 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등의 채광물 채취료
 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
 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
 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④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율은 사용료
 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 . -----

 ----- 감정평가법인등 -----

 ----- 감정평가법인등을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 -----
사용허가-----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7조제7항제2호-----

 ----- .

⑥ 영 제35조제2항제2호-----

우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율은 대부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

⑦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허가-----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용허가-----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사
용허가-----

<p>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p>
<p>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p> <p>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삭제</p> <p>2. 100만원 초과 : <u>6월 이내 3회</u> 분납</p> <p>3. 200만원 초과 : <u>9월 이내 4회</u> 분납</p> <p><신설></p> <p>③ (생략)</p>	<p>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2. ----- <u>연3회</u> -----</p> <p>3. ----- <u>연4회</u> -----</p> <p>4. <u>300만원 초과 : 연6회 분납</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u>감정평가업자</u>에 의뢰한다.</p>	<p>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p> <p>-----</p> <p>-----</p> <p>-----.</p> <p>-----</p> <p>-----</p> <p>-----</p> <p>----- <u>감정평가법</u></p> <p><u>인등</u>-----.</p>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라. 작성자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방 태 선

2023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 골자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 사업목적 및 용도

- 국가지정문화재(성산동고분군 5필지) 구역 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 활용 등이 어려워 매수 요청한 사유지 5필지를 매입하여 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훼손 등을 예방하고자 함.
- 문화재구역 내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는 소유자를 보호하고 사유지로 관리가 어려운 토지를 국유화하여 통합적인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6월
- 추진계획
 - 2022년 12월 : 2023년 당초예산 확보(750백만원, 국525 도112.5 군112.5)
 - 2023년 2월 : 감정평가 실시
 - 2023년 3월 ~ 2023년 6월 : 토지매입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750,000천원

- 재원조달 : 국비525,000천원, 도비112,500천원, 군비112,500천원

○ 사업규모 : 5필지, 59,062m²(17,866평)

○ 기준가격 명세

(단위:m², 백만원)

연번	재 산 표 시				부지매입 추정액	소유자	비 고
	리	지번	지목	지적			
계		5필지		59,062	750		
1	성산리	산159	목장	30,198	423	김*익	
2	성산리	산159-2	목장	332	5		
3	성산리	산159-3	임	17,669	212		
4	성산리	산119	임	10,711	108	배*길	
5	성산리	899	전	152	2	이*언	외1인

□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 사업목적 및 용도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고령화, 소멸화 등 농촌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차원의 선도모델 구축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

- 2022년 4월 :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
- 2022년 5월 : 경상북도 투융자심사 및 현장점검(2022. 7월)
- 2022년 12월 : 기본설계 용역 착수
- 2023년 4월 :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023년 5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년 6월 ~ 12월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4년 12월 : 공사 준공 및 운영준비 등

○ 소요예산 : 18,200백만원(국비 9,100, 도비 2,730, 군비 6,370)

- 2022년 : 1,200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비, 프로그램개발비)
- 2023년 : 8,500백만원(건축 및 시설공사)
- 2024년 : 8,500백만원(건축 및 시설공사)
- 재원조달 : 국비(정액) 9,100, 도비(정액)2,730, 군비6,370
- 재원별 사업비
 -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프로그램개발비 :1,200백만원
 - 건축공사(토목, 전기 등 포함) : 17,000백만원

○ 사업규모

- 위 치 : 성주읍 성주읍 금산리 724 외 3필지(구.삼동연수원)
- 부지면적 : 36,912㎡ (23,248㎡ 사용예정)
- 건물 : 2동, 4,075㎡ (성주읍 금산리 724, 724-2 일원)
 - 케어센터(1,275㎡, 2층, 4,300백만원)
 - ▶ 건강지원실, 프로그램실, 생활실, 사무실, 상담실 등
 - 팜센터(2,800㎡, 3층, 9,500백만원)
 - ▶ 로컬푸드 체험·판매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
- 스마트가든(유리온실) : 1동, 500㎡, 300백만원 (성주읍 금산리 724-3 일원)
- 비닐하우스 : 3동 정도 12백만원 (성주읍 금산리 724-2 일원)
- 활동텃밭, 원예정원 : 11,000㎡ 정도 (성주읍 금산리 724-2, 724-3 일원)
- 기타 부대비(기반정비, 원예, 조경, 프로그램 개발비 등) : 4,088백만원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국민의 건강과 일상회복, 영양과 재활, 교육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연계서비스 공급기반 구축

□ **종합복지타운 조성(은세대 플랫폼 구축)**

○ **사업목적 및 용도**

-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노인종합복지시설·장애인복지회관·자활센터·볼링장)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2. ~ 2025.(4년간)
- 추진계획
 - 22.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3. 01. : 지방재정투자심사
 - 23. 01. : 공모설계 용역 발주
 - 23. 10. : 공사 착공
 - 25. 12. : 공사 준공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360억 원(공사비 320억 원, 설계·감리비 40억 원)
- 재원조달 : 지방소멸대응기금 : 102억 원, 국비 : 148억 원,
 군비 : 110억 원

○ **사업규모**

- 위치 : 성주읍 성산리 69번지
- 대지면적 : A=2,961㎡
- 건축규모 : 5층, 연면적 A=7,800㎡